

「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」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「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」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하고자,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 및 「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.

2. 추진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시 설 명	위 치	現 위탁기간	수탁기관
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	금천구 탑골로 8길 23	2019. 7. 1. ~ 2020. 6.30.	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1) 위탁기간 : 2020. 7. 1. ~ 2022. 6. 30. (2년)
- 2)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
- 3) 시설위치 : 금천구 탑골로 8길 23

4) 위탁업무

가)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

나)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

다)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및 자율기획사업

라)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

4. 재계약 추진 필요성

다년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존 수탁기관과의 운영유지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5. 관계법령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

관 계 법 령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<개정 2016.7.18.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<개정 2016.7.18.>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<신설 2009.12.24.> <개정 2016.7.18.>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,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,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[전문개정 2016.7.18.]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

제15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)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
2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
3. 경영, 노무, 회계, 마케팅 상담, 교육,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
4.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
5.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
6.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
7.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·자료 제공
8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」에 따른다.